

전주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23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234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가단363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전북은행

변론 종결 2018. 11. 1.

판결 선고 2018. 11. 22.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가단363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3. 13. 접수 제3043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상국

판사김진성

판사박미영

별지